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수 당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민원 및 일 잘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안전수당·가산금 신설, 비상근무수당 인상, 특별성과가산금 지급을 확대하고,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8급 상당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며, 위험·격무업무 담당공무원의 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직무 중심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6항 중 “2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14조의2제1항 중 “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산휴가”로 하고,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을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 하고,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을 “휴직(육아휴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같은 영 제4조제3항·제4항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9급, 9급 상당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를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 (이하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또는 60퍼센트를 각각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8급(상당)부터 9급(상당)까지 공무원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야간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중 “14만원”을 “16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13호의”를 “한정한다), 같은 표

제12호 및 같은 표 제13호의”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의 제2호 지급대상란 가목 중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를 “제2조제2항, 「약사법」 제2조제2호 및 「간호법」 제12조”로 하고,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70,000원”을 “140,000원”으로 하며, 같은 란 3) 중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지급대상란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며, 지급대상란 다목 가)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란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지급대상란 마목 중 “「의료법」 제80조의2”를 “「간호법」 제15조”로 한다.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 지급대상란 가목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란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를 “가) 지급액”으로 하고,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중 “2) 가산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을 “나) 가산금 지급대상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로 하고, 같은 란 “3) 지급방법”을 “다) 지급방법”으로 한다.

- 1)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2) 1) 이외 공무원 중 민원의 난이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3% 범위 내)

(1) 1)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2) 2)의 해당자 월 30,000원 이하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 바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 중 “70,000원”을 “80,000원”으로 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 지급대상란 차목 중 “24퍼센트 범위 내”를 “27퍼센트 범위 내”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 월 지급 상한액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연수	근무연수
1급(상당) 또는 2급(상당) 공무원	300,000원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	200,000원
5급(상당) 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원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 카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를 3)으로 하며,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산금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담당 직무의 난이도 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2호 지급대상란 중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을 “적극행정 및 민원처리 분야에서 우수한”으로, “공무원”을 “공무원(정원의 1% 범위 내)”으로 하고, 지급액 및 지급대상란 1) 중 “20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며, 같은 란 2) 중 “2년간”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란 3) 중 “구체적인”을 “지급방법: 구체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로 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3호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 중 “8,000원(월 120,000원”을 “16,000원(월 180,000원”으로 한다.

별표 12에 비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4의 표 중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을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로 하고, “8·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를 “8·9급(상당)”으로 하며, 비교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수대민공무원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9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⑤ (생략)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 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 ----- ----- 5퍼센트 ----- ----- ----- ----- ----- ----- ----- ----- ----- -----
⑦ ~ ⑫ (생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② (생략)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④ 삭제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	⑤----- ----- ----- ----- ----- ----- ----- ----- ----- ----- -----

_____.

_____.

매주 최소 10 시간 단축분에 대 한 육 아 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 간 선택 제 진 환 공 무 원 지정일 기준 월 봉 금 액 에 해당하는 금액 (250 만 원 을 상 한 액 으 로 하 고, 50 만 원 을 하 한 액 으 로 한 다)	10 (주 당 단축 근 무 시 간 이 10 시 간 미 만 인 경 우 에 는 실 제 단축한 시 간 으 로 한 다)
			공 무 원 의 주 당 근무시간
나 머 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 한 육 아 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 간 선택 제 진 환 공 무 원 지정일 기준 월 봉 금 액 의 80 퍼 센 트 에 해당하는 금액 (160 만 원 을 상 한 액 으 로 하 고, 50 만 원 을 하 한 액 으 로 한 다)	공 무 원 의 주 당 근무시간 - 시 간 선택 제 진 환 공 무 원 주 당 근무시간 - 10 (주 당 단축 근무시간이 10 시 간 미 만 인 경 우 에 는 실 제 단축한 시 간 으 로 한 다)
			공 무 원 의 주 당 근무시간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 사산

휴가-----

----- 휴직 중인 공무원

----- 휴직(육아휴

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

② (현행과 같음)

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55페이지

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같은 영 제4조제3항·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9급, 9급 상당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이하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또는 60퍼센트를 각각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무수당) ①·② (생략)	근무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8급(상당)부터 9급(상당)까지 공무원	<신설>	③ 야간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 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정액급식비) ----- ----- 16만원----- ----- ----- ----- ----- ----- -----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⑦ (생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수당, 같은 표 제11호사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⑧----- ----- ----- ----- ----- ----- 한정한다), 같은 표 제12호 및 같은 표 제13호의 ----- -----.
		⑨ ~ ⑬ (생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